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(신종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22-144
변 호	

발의년월일: 2022. 11.

발 의 자: 신종갑, 강동오, 권영숙, 권인순,
김승수, 남해석, 안미자, 이한동,
장정희, 차해영, 최은하, 채우진,
홍지광

1. 제안이유

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라.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(안 제5조)
- 마. 예우 및 지원 (안 제6조)
- 바. 표창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22. 11. 18. ~ 11. 23.
- 나. 조례안 : 붙임
- 다. 관계법령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기등”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인체조직”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장기등기증자”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조직기증자”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
5. “장기등기증희망자”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
6. “조직기증희망자”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
7. “등록 창구”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.

8. “접수 창구”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민원 담당부서,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(이하 “장기기증”이라 한다)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.

제4조(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
2.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사항

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) 구청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, 구청 민원실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예우 및 지원) 구청장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구 보건소의 구민건강검진 수수료 감면 등의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표창)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2. 22.] [법률 제18623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7. 30., 2021. 12. 21.>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3.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5.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

□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8. 17.] [법률 제18447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5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 조직의 기증·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 1. 28.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6조(예우 및 지원)

구청장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구 보건소의 구민 건강검진 수수료 감면 등의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강동룡
연 락 처	02-3153-9121